# 이용안내서

* 음악이 흐르고 웃음이 넘치는 자유로운 어르신들의 힐링 리조트
답답하고 좁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돌봄이라 할 수 있을까요?
차별화된 요양원 생활을 통해 어르신들께 활력과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## 행복실버케어요양원 요양원 소개

**시 설 명 :** 행복실버케어요양원
**소 재 지 :**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18, 301호
**시설의 종류 :** 노인요양시설
**설 치 자 :** 김태준
**개 원 일 :** 2024년 04월 01일
**입 소 정 원 :** 29인 시설
**전 화 번 호 :** 062-575-3001
**팩 스 번 호 :** 062-575-3002
**이 메 일 :** silvercarehappy@naver.com
**홈 페 이 지 :** https://blog.naver.com/silvercarehappy

### * 시설현황

침실 8개, 특별침실, 사무실, 요양보호사실, 자원봉사실, 의료 및 간호사실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 및 조리실, 세면실, 휴게실, 보일러실, 세면장 및 목욕실,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등

## * 인력현황

| 구분 | 시설장 | 사무국장 | 사회복지사 | 간호사 | 물리치료사 | 사무원 | 요양보호사 | 영양사 | 조리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간 | 1 | 0 | 2 | 1 | 0 | 0 | 13 | 0 | 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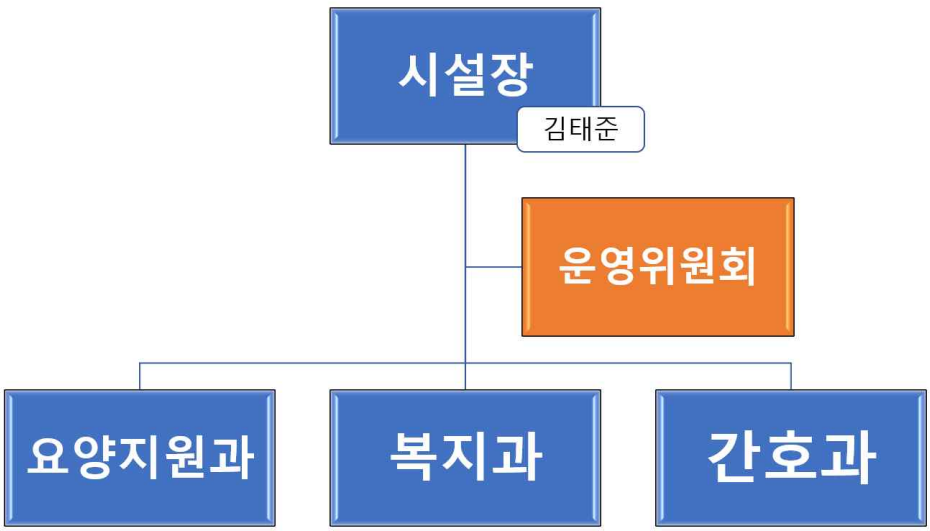

* 약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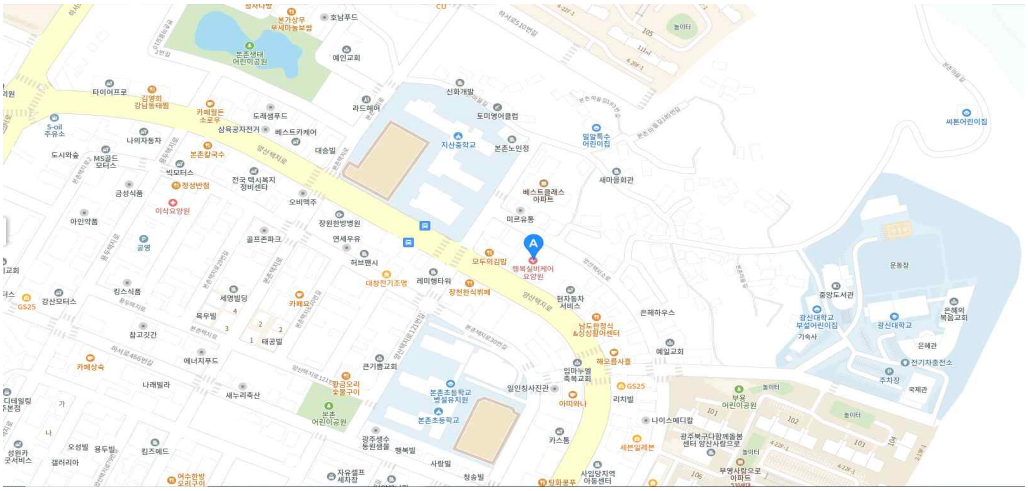

* 전경사진

* 시설 사진

| | | |
|---|---|---|
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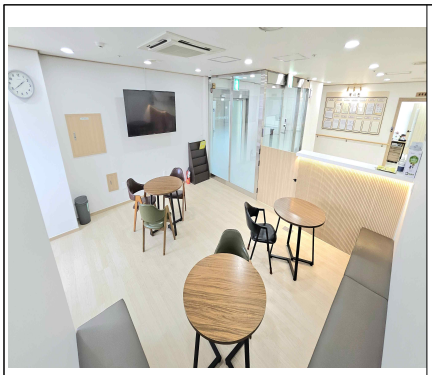 |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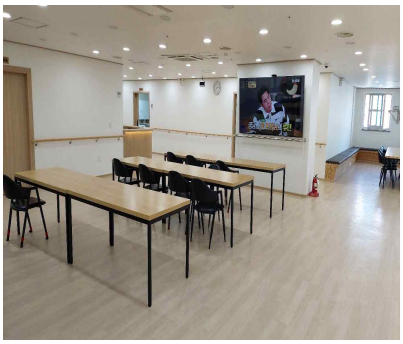 |
| 휴게실 | 복도 | 프로그램실1 |
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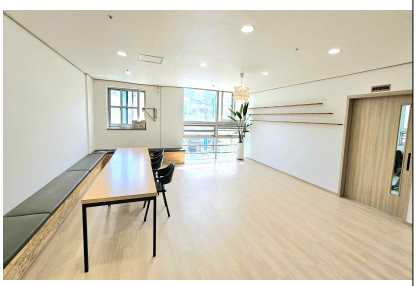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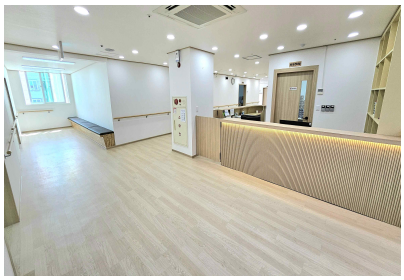 | |
| 프로그램실2 | 간호스테이션 | 호실 |

#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##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### 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(법 제7조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(법 제12조)

### 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### 장기요양인정절차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→ 결과 통지(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).

**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**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
#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
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,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.

# 본인부담금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(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재가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시설급여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#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
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   (1)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      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
      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      -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   (2)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 (3)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    -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      -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3.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      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,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    -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

# 제공급여

| 신체활동지원 |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| 기능회복훈련 |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| 긴호관리 | 응급서비스 임종간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세면도움<br>*구강청결도움<br>*머리감기도움<br>*몸단장<br>*옷갈아입기도움<br>*신체청결도움<br>*식사도움<br>*체위변경<br>*화장실이용도움<br>*이동도움<br>*신체기능유지증진 | *인지관리지원<br>*의사소통도움 | *신체인지기능향상<br>*프로그램<br>*신체기능훈련<br>*일상생활동작훈련<br>*인지,정신기능 향상 훈련<br>*여가,정서프로그램 | *건강상태확인<br>*기초건강관리<br>*투약관리<br>*감염간호<br>*관절구축예방<br>*치매돌봄정보제공<br>*인지훈련<br>*의료기관 의뢰 등 | *욕창관리<br>*영양관리<br>*배설관리<br>*통증관리<br>*호흡기간호<br>*구강간호<br>*당뇨발관리 | *응급간호<br>*임종간호 |

# 입소계약에 관한사항(급여이용제공정보)

<table>
<tr><td>입소대상</td><td>* 치매•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~5 등급을 받은 자<br>*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</td></tr>
<tr><td>입소계약</td><td>기간, 목적,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•의무,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<br>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<br>-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br>- 계약기간 : 연중<br>- 보호자의 권리 의무<br>1) 기관의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.<br>2)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담당자의 요청에 협조한다.<br>3) 보호자 부재 (장기간 입원, 여행 등)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한다.<br>4) 정한시일에 맞추어 입소비용을 납부한다.<br>- 계약의 해제<br>1)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<br>2)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에 걸렸거나 또는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.<br>3)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심대한 불안을 조성 할 때<br>4) 입소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요양원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</td></tr>
<tr><td>입소절차</td><td>
<table>
<tr><td>신청</td><td>심사</td><td>통지</td><td>계약</td><td>서비스 제공</td></tr>
<tr><td>*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</td><td>*등급판정</td><td>*장기요양인정서<br>*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통지서</td><td>*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</td><td>*서비스 실시</td></tr>
<tr><td>국민건강보험공단</td><td>등급판정위원회</td><td>국민건강보험공단</td><td>행복실버케어 요양원</td><td>행복실버케어 요양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입소서류</td><td>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.<br>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.</td></tr>
<tr><td>가. 장기요양인정서<br>나.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<br>다. 주민등록등본(신분증)<br>라. 건강진단서(감염병 관련)<br>마. 처방전<br>바. 기타 필요에 의한 서류</td></tr>
</table>

## 의료적 절차

위급상황 및 의료적 개입이 필요할 시 본 요양원과 119에 협조를 얻어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
## 시설물 사용 시 주의 사항

안전을 위하여 직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외부 출입 시 직원과 동행한다.
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분실, 훼손했을 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.

# 노인학대예방포스터

본 포스터는 Goodwinus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학대노인
우리는 지킴이!
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
신체적 학대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·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대출
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방임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24시간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
1577-1389
보건복지부
노인보호전문기관
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